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6
----------	-----

2019. 4. 30.(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9년 4월 9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4월 18일

-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태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의 설립근거 및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는 시책사업 발굴협의,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협의 등

포럼은 지역발전 방안 주제발굴, 지역현안 대안 제시 등(안 제2조)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포럼은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3조)
- 협의회위원 및 포럼 위원이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안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남·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구성에 대해 규정을 하였음.
  -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와 포럼의 위원 임기,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의 설립근거 및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다만,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나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경우 조례안에 규정한 대로 해석을 하면 1개의 협의회나 포럼을 구성하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어 구성되는 협의회 및 포럼을 명확하

계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조례는 도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포하므로 충청북도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지역의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충청북도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범위와 남부권과 북부권이 각각의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7. 소 수 의 견 요 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원안)」
-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제156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원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4월 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원안)

의안 번호	156
----------	-----

제출연월일 : 2019년 4월 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함.
-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의 설립근거 및 수당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

## 2. 주요내용

- 협의회는 시책사업 발굴협의,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협의 등 포럼은 지역발전 방안 주제발굴, 지역현안 대안 제시 등(안 제2조)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포럼은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3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원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남·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북도 남·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협의
2. 충청북도 남·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협의
3. 남·북부출장소 신규사업 및 포럼에서 제안된 시책에 대한 자문 등

②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발전 방안에 관련된 주제 발굴
2.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 제시
3. 관광, 복지, 농업, 환경, 건설 등 분야별, 지역별 연계 시책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하 “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협의회부위원장”이라 한다)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협의회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2. 협의회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3. 협의회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균형건설 또는 농정분야 담당국장, 관할 지역 시·군 부단체장,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장으로 한다.

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관할지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4) 시·군의회에서 추천한 시·군의원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포럼은 위원장(이하 “포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포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각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포럼위원장과 포럼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포럼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장으로 한다.

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관광, 복지, 농업, 건설, 환경, 경제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포럼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 및 포럼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역할 등) ① 협의회위원장은 전체 협의회위원을 대표하여 협의회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부위원장은 협의회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포럼위원장 및 포럼부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위원장 및 포럼위원장은 각각 해당 회의를 소집하고, 각각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가.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포럼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 및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각각 1명씩을 둔다.

② 협의회 간사는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장이 되며, 포럼의 간사는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위원장 및 포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① 협의회위원 및 포럼 위원이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럼개최 시 주민대표 등 위원이 아닌 자로서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둘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남·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 구성·운영

## 2. 비용 발생 요인

-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위원 참석수당 및 행사 비용 등

## 3. 관련조문

- 안 제9조(수당)
  - 협의회 및 포럼 위원이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포럼개최 시 주민대표 등 위원이 아닌자로서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협의회 및 포럼위원 참석수당 및 행사 개최비용 등
- 나. 추계의 전제 : 협의회 및 포럼위원 100명(위촉 88명\*), 각각 연 2회이상 개최
  - \* 북부출장소 43명, 남부출장소 45명
- 다. 추 계 결 과 : '19년부터 향후 4년간 총134,240천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세 출	134,240	33,560	33,560	33,560	33,560
북부출장소	64,000	16,000	16,000	16,000	16,000
남부출장소	70,240	17,560	17,560	17,560	17,560

※ 북부출장소 : 16,000천원 (참석수당 8,600, 행사비용 7,400)

※ 남부출장소 : 17,560천원 (참석수당 9,000, 행사비용 8,560)

## 6. 작성자 : 행정국 북부출장소장 이 명 현, 남부출장소장 홍 순 덕

의안번호	제156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수정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4월 9일

#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수정안)

의안 번호	156
----------	-----

제출연월일 : 2019년 4월 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함.
-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의 설립근거 및 수당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

##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남부권과 북부권의 범위 정의 및 발전협의회·발전포럼의 구성단위를 규정(안 제2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수정안)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남·북부권”이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조제3항의 북부출장소 관할구역과 제60조제3항의 남부출장소 관할구역을 말한다.
2.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란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협의회를 말한다.
3.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이란 조례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포럼과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포럼을 말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충청북도 남·북부권”이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조제3항의 북부출장소 관할구역과 제60조제3항의 남부출장소 관할구역을 말한다.</p> <p>2.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란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협회를 말한다.</p> <p>3.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이란 조례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포럼과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포럼을 말한다.</p>
제2조(기능) (생략)	
제3조(구성) (생략)	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생략)	제4조(구성)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역할 등) (생략)	제5조(위원의 임기)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생략)	



현행	개정안
제7조(간사) (생략)	제6조(위원장의 역할 등)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현행과 같음)
제8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생략)	제8조(간사)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생략)	제9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규칙) (생략)	제10조(수당)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규칙) (현행과 같음)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남·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 구성·운영

## 2. 비용 발생 요인

-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위원 참석수당 및 행사 비용 등

## 3. 관련조문

- 안 제10조(수당)
  - 협의회 및 포럼 위원이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포럼개최 시 주민대표 등 위원이 아닌자로서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협의회 및 포럼위원 참석수당 및 행사 개최비용 등

나. 추계의 전제 : 협의회 및 포럼위원 100명(위촉 88명\*), 각각 연 2회이상 개최

\* 북부출장소 43명, 남부출장소 45명

다. 추 계 결 과 : '19년부터 향후 4년간 총134,240천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세 출	134,240	33,560	33,560	33,560	33,560
북부출장소	64,000	16,000	16,000	16,000	16,000
남부출장소	70,240	17,560	17,560	17,560	17,560

※ 북부출장소 : 16,000천원 (참석수당 8,600, 행사비용 7,400)

※ 남부출장소 : 17,560천원 (참석수당 9,000, 행사비용 8,560)

## 6. 작성자 : 행정국 북부출장소장 이 명 현, 남부출장소장 홍 순 덕